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9. 10. 19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0. 1.

나. 제안자 : 김용재·최만용·허식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09. 10. 1.

라. 상정일자 : 2009. 10. 12(제1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허식 의원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부정책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
-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민자전거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3조)
-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동 조례안은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예산범위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이나 수당지급 등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- 인류의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에 있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증대할 수 있어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이은석 위원
 -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이용 소요시간, 도로환경 개선, 샤워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

< 답 변 >

-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 - 민간부분은 샤워시설, 공공부분은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문희출, 강문기, 허식, 노경수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, 박승희 위원
- 나. 반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8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- 없 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시민자전거의 운영)”을 “(시민자전거 등의 운영)”으로
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등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
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
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

- 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
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
시장에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3조(시민자전거의 운영)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</u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u>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3조(시민자전거 등의 운영) ①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전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등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</u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